

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

제8조(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)

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계약기간

(1) 서비스 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,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해야 한다.

(2)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서는 계약일,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 사항, 개인정보보호, 계약의 해지,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작성하여야 한다.

나. 계약목적 -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(기관)와 서비스대상자(보호자)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.

다. 본인부담금 -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.

(1)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.

(2)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% 또는 40%를 경감한다.

라.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.

단)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에 의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을’은 50%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.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해 변경될 수 있다.

마.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.

※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(2026.01.01.이후~)

구 분		(방문당) 금액(원)
방문 요양	30분 이상	17,450 원
	60분 이상	25,320 원
	90분 이상	34,120 원
	120분 이상	43,430 원
	150분 이상	50,640 원
	180분 이상	57,020 원
	210분 이상	63,530 원
	240분 이상	70,080 원

※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 급여비용

구 분		(방문당) 금액(원)
방문목욕	목욕차량(차량)이용	88,990 원
	목욕차량(가정)이용	80,230 원
	목욕차량 미이용	50,100 원

※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 등급
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	676,320

바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,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

(1) 권리

- 가)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나)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
- 다)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라)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- 마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

(2) 의무

- 가)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
- 나)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
- 다) 개인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
- 라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
- 마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 의무
- 바)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

(3) 계약의 해제

수급자(보호자)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, 장기요양 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(보호자)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

-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.

가)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
나)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
다) 5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
라)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

마)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사. 이용료 등 수납 -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.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 한다.

아.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-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.

제9조(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)

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급여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,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때,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하는 때 및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이용료 등의 변경이 필요시에는 그 비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, 수급자(보호자)와 기관이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.

제10조(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)

가. 서비스의 내용

(1)노인장기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호 시행지침(이하 “시행지침”이라 한다.)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표준서비스(분류표 참조)를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”에 따라 제공한다.

가) 방문요양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

구분	표준 서비스
신체활동지원	세면도움, 구강관리, 식사도움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머리감기기, 목욕도움, 화장실이용하기, 이동도움, 체위변경,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
가사활동지원	취사, 청소 및 주변 정돈, 세탁 등
개인활동지원	외출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 등, 행동변화, 응급상황대처 등
정서지원	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도움 등
기타	행동변화, 응급상황 대처 등,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.

- 나) 방문목욕 : 방문목욕 필요시 2인의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급여를 제공한다.
- (2)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“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”를 참고하여 “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”를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(3)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(대리인)의 신청 또는 협의가 있어야 한다.

나. 서비스의 세부사항

- (1) 신체활동 지원
 - 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, 기저귀 교환, 식사 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, 운동 및 일상생활 훈련 보조 등
- (2) 일상생활(가사)지원서비스
 - 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, 장보기 등
- (3) 개인 활동 지원
 - 외출동행, 병원안내 및 동행, 산책동행, 각종 정보안내, 기타 일상 업무 지원 등
- (4) 정서지원
 - 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- (5) 치매관리 지원
 - 행동변화 대처, 프로그램 진행
- (6) 다음 항목 외의 경우 제외
 -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.

-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가 아닌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.

(7) 방문목욕

- 가정방문 방문목욕

다.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

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지며, 기타 비 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.